

# 報道參考資料

99. 4. 8

## 題 目: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일정

### 主要內容

#### □ 추진 배경

- 상장법인의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경영투명성을 제고
- 세계은행 구조조정차관(SAL) 협약상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세계은행측과 합의(98.9)

#### □ 법무부의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 추진(기발표)

- 감사위원회는 현행 감사와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
-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
-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
- 감사위원회는 현행 상법상의 감사의 기능을 수행

#### □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위원회 도입계획

-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\*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하여 상법상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

\* 예시: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1,000억 원 이상

- 아울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상장법인의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법상의 감사 선임 및 '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'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의무를 면제할 예정

제도 도입 추진일정

-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

\* 법무부는 상법개정안을 '99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바, 상법개정안이 '99년 정기국회에서 심의·의결되는 경우 2000년 1/4분기에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

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

- 업무 및 회계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
-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감독 가능
- 국제투자자에게 익숙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·시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

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의 의미: 별 첨

\* Internet ID([www.mofe.go.kr](http://www.mofe.go.kr)), PC통신 ID(go EPI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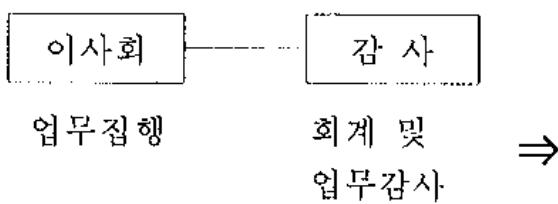
報道資料生産課 :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TEL : 500-5363~5

財政經濟部公報官室

## <별첨>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의 의미

-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(이사회)과 감독기능(감사)을 별개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二元制(Two-tier system) 채택
  - 독일식에 이원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, 감사회 대신 독임 감사를 채택하고, 이사 및 감사를 모두 주총에서 선임한다는 점에서 차이
  - \* 독일에서는 감사회를 구성하는 감사만을 주총에서 선임하고,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는 감사회에서 임명
-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을 이사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영미식의 一元制(Single-tier system)제도
  - 업무집행: 상임이사(Executive Director)가 주축이 된 이사회내의 경영위원회(Executive Committee)에서 담당
  - 감독기능: 사외이사(Non-Executive Director)로 구성된 이사회내의 감사위원회(Audit Committee)에서 담당
  - ⇒ 일원제이나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기본철학은 독일식의 이원제와 차이가 없음

< 현행 시스템 >



< 새로운 시스템 >

